

농 촌 진 흥 청

주 의 요 구

제 목 ○○○○○○○ ○○ 시범사업 예산집행 부적정

기 관 명 기장군

내 용

기장군 ○○○○센터에서는 농촌·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·중·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에 연계 운영할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“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 시범사업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, 편성목, 통계목으로 분류하며,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고 되어 있고, 별표 12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.

그런데도 기장군 ○○○○센터에서는 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 시범사업(사업비 50백만원, 2개소)를 추진하면서, 총사업비 50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,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의 기능에 맞지 않는 교육농장컨설팅 사업으로 10백만원을 집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[주의]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을 준수하여 기능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여주시고,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